

지정번호 제 호

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서

- 기 관 명:
- 대 표 자:
- 소 재 지:
- 지정항목:

위 기관을 「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」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
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립환경과학원장

직인

(뒤쪽)

<변경사항>

[illegible]

<처분사항>

[illegible]